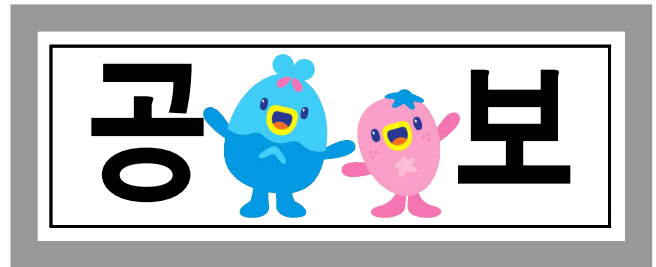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22호 2024년 3월 22일(금)

조 례

-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
-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3

고 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19

공 고

- 2024년도 속초시 민방위 교육강사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 공고 21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4

입법예고

-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1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37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 48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7호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

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수 활동을 말한다.

2. “국내연수”란 속초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속초시에 필요한 정책을 비교·탐색하기 위해 국내 타 지역의 사례를 견학·시찰하는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교육연수 및 국내연수(이하 “교육연수 등”이라 한다)는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조(책무)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연수 등을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교육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속초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내연수는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수활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실태 점검 및 평가
5. 개인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 한도 등)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실시) ① 의장은 교육연수 실시 기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 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따라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

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내연수 지원) ① 국내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비교·탐색하기 위해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 연수 활동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연수 활동 제안서를 접수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
2. 연수활동의 구체적 동기
3. 연수 대상지역의 비교·탐색 사례의 적정성 여부

③ 국내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연수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비용 반납)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의원 중 제8조제3항의 증빙서류 및 제9조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속초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개인별 교육연수는 연간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연수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비용			
연수 분야			
교육내용			

※ 비용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국내연수 활동제안서

제안자		직위	
연수목적			
연수기간	. . . ~ . . . (일간)		
연수장소			
주요내용			
기대효과			

20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의회 의장 귀하

속초시의회 의원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8호

속초시의회 의원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의원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으로 한다.

별표 제1호와 별표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9호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4항 중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 이상이고 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용역 등) 8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강원대금알림e”를 각각 “하도급지킴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90호

속초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
5.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옥외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단,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속초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

고, 자기가 소유·관리·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후원자
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9.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제9조(질서유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단 및 해산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속 초 시 장

1. 목 적

- 대포초등학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행로가 추가 확보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3. 지정 변경(확대) 위치: 붙임 위치도 참조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지정(변경)구간	변경(확대) 사유
확대	대포초등학교	속초시 대포동 350	붙임 참고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따른 추가 지정

4.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처 : 속초시 건설과(☎033-639-2019)

【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위치

■ 시 설 명: 대포초등학교 / 속초시 대포동 350

당초(현재)



변경 / 설악산로4번길(360m)



2024년도 속초시 민방위 교육강사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 공고

속초시 공고 제2024-208호(2024. 3. 4.)에 따라 시행한 2024년도 속초시 민방위 교육강사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속 초 시 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4명

모집 구분	접수번호	성 명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	01	김○익
	02	박○유
	03	전○열
	04	정○우

□ 면접심사 세부계획

가. 면접 일시·장소 : 2024. 3. 26.(화) 14:00~, 속초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나. 진행순서 : 지원서 접수순에 따라 심사 (※ 1인 15분 이내)

채용분야	면접일자	면접심사 시 간	비 고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	2024. 3. 26.(화)	14:00~	김○익
		14:15~	박○유
		14:30~	전○열
		14:45~	정○우

※ 면접심사 시간은 앞선 면접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 유동성 있음

다. 면접심사 기준(평정요소) : 12개 항목 / 100점 만점 (※ 붙임1 참조)

평 정 요 소	점 수	비 고
① 면접심사(3개 항목) - 경력·전공분야, 용모·자세, 민방위 기본상식 ※ 8분 이내 질의 예정	30점	
② 강의자료(4개 항목) - 교육목표, 내용·적절성, 간결성·주제 전달성, 강의자료의 최신화	20점	
③ 강의시연(5개 항목) - 교육목표에 맞는 강의시연, 본강의자료와 시연자료의 일치성 주어진 시간 준수, 의사 전달성·전문성, 전문지식과 응용력 ※ 제출된 PPT자료를 활용한 7분 이내 강의시연 예정	50점	
계	100점	

※ 면접심사 점수는 평균 산출

라.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자 최종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항목 ③ → ② → ① 고득점자 순으로 함
마. 지원자 지참물 : 신분증

□ 최종 합격자 발표

가. 2024. 3. 29.(금) / 속초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란) 공지

□ 지원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지정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접포기로 간주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나. 응시자는 면접심사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기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재난대응과 민방위팀(☎033-639-22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속초시 민방위 강사 면접 심사표

면접번호		과 목 명		강 사 명	
		기 본 소 양			
면접심사	평가항목	배점(30점)			
		우수	보통	미흡	
	① 경력, 전공분야	10	8	6	
	② 용모 및 자세	10	8	6	
면접심사	③ 민방위 기본상식	10	8	6	
	- 편성연령, 과태료부과금액, 대원 편성제외자, 대원 연차별 교육형태 및 시간 등				
강의자료 (PPT 요약본)	평가항목	배점(20점)			
		우수	보통	미흡	
	④ 교육목표	5	4	3	
	- 민방위의 중요성 및 임무와 역할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기본소양				
⑤ 내용 적절성	5	4	3		
⑥ 간결성 및 주제 전달성	5	4	3		
⑦ 강의 자료의 최신화	5	4	3		
강의시연	평가항목	배점(50점)			
		우수	보통	미흡	
	⑧ 교육목표에 맞는 강의시연	10	8	6	
	⑨ 본강의자료와 시연자료의 일치성	10	8	6	
강의시연	⑩ 주어진 시간 준수	10	8	6	
	⑪ 의사 전달성 및 전문성	10	8	6	
	⑫ 전문지식과 응용력	10	8	6	
	총점				
총평					
심사위원	2024. 3. . 성명 (서명)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3. 22.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03. 22. ~ 2024. 04. 06. (15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유순○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2/1	건축물 부존재	청호동 837	목조/ 주택 18.18㎡

4. 유의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으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3.04.27.)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경비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033-639-2732(FAX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639-27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찰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현재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기하여 주민들의 통행권 및 수면권이 침해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 규정(안 제4조)

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공영주기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건설정책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753
FAX 033-639-24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건설정책팀(033-639-2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속초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되고 있거나 설치된 공영 주기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기장 이용료 (제6조 관련)

구 분	적 요	이용료		비 고
		시간 요금	1일 요금	
일반이용	최초 2시간 무료	1,000원/시간	5,000원/일	
정기이용		50,000원/월		

비고

가. 일반이용의 경우 1일이란 해당 일의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입차 후 1일 초과 시 시간 요금 또는 1일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나. 시장은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기계의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에 출입 시 사용하는 차량을 공영주기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2. 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및 분류체계가 재정립되면서 상위법령과 불일치·기능 상실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법 체제전환에 따른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
※ 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기본법 등
 - 나. 용어 치환

※ 문화재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국가유산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안내

- 1) 제출기간: 2024. 9. 30. ~ 2024. 10. 29.(20일간)
-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345)
- 3)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문화체육과)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 ☎ 033-639-22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제1조(「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의 개정)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 관람료 징수구분”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14조”로 한다.

제4조(「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속초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4조제5호 중 “지역문화 유산” 을 “지역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6조(「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유산” 을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7조(「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8조(「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유산” 을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9조(「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 <u>무형문화재</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 13. (생략)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유산 ----- -----」 ----- 12. · 13. (현행과 같음)

제2조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u>문화유산</u> ,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국가유산,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u>문화유산</u> 을 말한다.	5. ----- ----- ----- <u>국</u> <u>가유산</u> -----

제3조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 <u>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u> 」으로 정하는 <u>국가 지정 문화재 관람료 징수구분</u> 에 따라 정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u> 」 제14조-----.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 <u>지역문화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문화유산</u> ,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국가유산</u> , ----- -----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 속초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u>지역문화 유산</u> 보존·육성 6. ~ 8. (생략)	제4조(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 국가유산</u> 보존·육성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u>문화유산</u> 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 ----- ----- 국가유산----- ----- ----- -----.

제7조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국가유산</u>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문화유산</u>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생략)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강원도 주관부서	소관 담당부서	비고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강원특별 자치도 주관부서	소관 담당부서	비고
주요 상황 매뉴얼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관광 국	문화체육 과		주요 상황 매뉴얼	국가유산	국가유산 청	문화체육 국	문화체육 과	

제10조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때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 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 괴	4. ----- ----- 국가유산 -----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제9조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강원도 주관부서	소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지진 및 해일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과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산림환경국	공원녹지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친환경정책과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친환경정책과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과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제국	지역경제과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건축과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감염병	보건복지부	복지보건국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복지보건국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친환경정책과	
	식용수	환경부/국토교통부	산림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교통과	
	성폭력	여성가족부	복지보건국	교육가족지원과	
주요상황 매뉴얼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건설과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친환경정책과	
	저수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건설과	
	황사	환경부	산림환경국	친환경정책과	
	산사태	산림청	산림환경국	공원녹지과	
	국가유산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경기장 및 공연장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2. 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및 분류체계가 재정립되면서 상위법령과 불일치·기능 상실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법 체제전환에 따른 용어 치환
 - ※ 문화재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국가유산
 -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유산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안내

- 1) 제출기간: 2024. 9. 30. ~ 2024. 10. 29.(20일간)
-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345)
- 3)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문화체육과)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 ☎ 033-639-22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제1조(「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립 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부서	단위업무	부서	단위업무
문화체육과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3.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체육과	3. 국가유산 보존관리
문화체육과	가. 문화재지정 신청	문화체육과	가. 국가유산 지정·등록, 신청·해제
문화체육과	나. 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문화체육과	나. 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
문화체육과	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관리	문화체육과	다. 국가유산 명예관리인 관리
문화체육과	라. 문화재사범 단속	문화체육과	라. 국가유산 사범 단속
문화체육과	마. 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허가신청	문화체육과	마.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허가신청
문화체육과	바. 발견 매장문화재의 신고	문화체육과	바. 발견 매장유산의 신고
문화체육과	사.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신고 접수	문화체육과	사.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신고 접수
문화체육과	4. ~ 26.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4. ~ 26. (현행과 같음)

제2조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경력구분	경력내용	적용비율	경력구분	경력내용	적용비율
유사경력	·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이상	50%	유사경력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상	50%
	·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50%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이수자	50%

제2조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경력구분	경 력 내 용	적용비율
단원경력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100%
	· 군복무 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준함)	100%
유사경력	· 국제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100% (비상근일 경우 50%)
	·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	80%
	· 해외에서 동일분야에 연구 연구 또는 연기를 한 경우	80%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상	50%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이수자	50%